

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<p>1. 통보국가: <u>프랑스</u></p> <p>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 항):</p>
<p>2. 담당기관:</p> <p>기업 총국/SCIDE/PNRP Bât. Sieyès -Teledoc 143 61, Bd Vincent Auriol 75703 PARIS Cedex 13 d9834.france@finances.gouv.fr</p> <p>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:</p> <p>보건 총국 연대보건부 14, avenue Duquesne 75 007 PARIS</p>
<p>3. 조항 2.9.2 [X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</p>
<p>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번호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화장품</p>
<p>5. 제목 (페이지수, 언어):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절차 및 관리 책임자 허가에 관한 명령 (3 페이지, 프랑스어)</p>
<p>6. 내용: 2023 년 재정에 관한 2022 년 12 월 30 일자 법률 제 2022-1726 호의 제 205 조는 화장품 및 문신 제품에 대한 기술을 국립보건제품안전청 (ANSM)에서 국립식품환경산업보건안전청 (ANSES) 및 소비자법 L.522-1 조에 명시된 경쟁 및 소비 담당 행정 당국으로 이전한다.</p> <p>동일 조항의 제 III 항에서는 헌법 제 38 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부는 조례를 통하여, 본 법률의 공표일로부터 1 년 이내에, 국민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, 특별히 공중보건법 제 L. 5131-1 조에 명시된 화장품이 우수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함을 증명하여 해당 법률 제 L. 5131-2 조에 명시된</p>

<p>시설에 대해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,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.</p> <p>따라서 본 명령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시설 범주의 화장품에 대한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 절차를 수립한다.</p> <p>인증 시스템 실행 방식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. 이것은 명령안 제 1 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법령으로 규정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통보된다.</p>
<p>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적과 근거: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(EC) n°1223/2009는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수립하며, 그 목적은 내부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함이다. 따라서 본 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 시 우수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회원국은 화장품을 제조 또는 포장하는 시설이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. 또한 규정의 전문 56은 회원국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는 한, 화장품 부문 경제 주체의 시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. 따라서 본 규정은 회원국이 우수제조관리기준 원칙을 준수하고,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면서 사용할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한다.</p> <p>수립된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, 우수제조관리기준의 원칙과 관련하여 시설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. 인증기관은 시장 감시 당국의 임무 수행을 지원한다.</p> <p>계획된 조치는 그 자체로 화장품과 관련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포장하는 특정 범주의 시설에 관한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. 실제로 이 조치는 회원국이 시행하는 우수제조관리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모니터링과 관련이 있으며, 화장품에 관한 요구사항과는 관련이 없다. 이 시스템의 목적은 인증 의무의 영향을 받는 시설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관련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.</p> <p>인증 시스템 실행 방식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. 특히 공중보건법 제 L5131-8 조를 개정하는 명령안의 제 1 조에 따라, 이것은 국무회의의 법령으로 규정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통보된다.</p>
<p>8. 관련 문서:</p> <p>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(CE) 제 1223/2009 호</p> <p>2023년 재정에 관한 2022년 12월 30일자 법률 제 2022-1726 호의 제 205 조</p>
<p>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</p> <p>시행 예정일: 추후 결정</p>
<p>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 일</p>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경제 및 금융 부처

DGE/SCIDE/PNRP

d9834.france@finances.gouv.fr

Bât. Sieyès -Télédoc 143

61, Bd Vincent Auriol

이메일: d9834.france@finances.gouv.fr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3/TBT/FRA/23_13200_00_f.pdf